제정 : 2015년 02월 06일 개정 : 2017년 12월 21일 개정 : 2017년 12월 26일 개정 : 2022년 09월 29일 개정 : 2023년 01월 31일 개정 : 2023년 04월 18일 개정 : 2023년 09월 01일 개정 : 2023년 09월 21일 개정 : 2023년 09월 21일 개정 : 2023년 09월 21일 개정 : 2023년 08월 05일 개정 : 2024년 08월 05일

# 정 관

주식회사 브릴스

# 주식회사 브릴스

#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브릴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BRILS Corp."(약호 BRILS)라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제2조(목적)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자동화 기계, 시험 장비 및 주문제작 전자패널의 생산 그리고 자동차, 포장 및 전자 산업에 속한 다양한 제조회사에 대한 기술 솔루션의 제공
- 1.전열기계, 정밀측정기기, 이화학기기 판매, 제조 및 무역업
- 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산업용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 1.협동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 1.서비스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 1.취출로봇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 1.지능형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 1.다관절로봇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 1.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 및 서비스업
- 1.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 1.로봇컨텐츠 제작, 판매업 및 서비스업
- 1.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
- 1.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
- 1.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 및 판매업
- 1.로봇임대업
- 1.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 1.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 1.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 1.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인천시에 둔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 사무소 및 자회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ril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고 한다)는 20,000주로 한다.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 주권, 일백 (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의 8 종으로 한다.
-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3 항의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9 조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① 회사는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 연0% 이상 10% 이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 ⑦ 회사가 청산 등으로 금전으로 환가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과 이사회에서 정한 우선분배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 항의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종류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하거나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⑨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율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⑪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 개월전에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에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제 13 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 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 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⑤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를 준용한다.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근로자복지기본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1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 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회사의 임직원
- 2.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
-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4.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제 6 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3. 그 밖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 ⑥ 제 1 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 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부여당시 시가)
-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⑧ 제 7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 11 조의 3 제 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았거나 부여받을 각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 합계가 5 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 ⑨ 제 1 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 의 20 이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 조의 3 제 4 항에 따라 제 1 호 및 제 4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7년 내에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3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제 14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5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 16조 (주주 등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 17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 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9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20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 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인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 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초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정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23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 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 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24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8조 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2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

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4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6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 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8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4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 3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3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 경과의 요령과 결과는 영문 및 국문 의사록에 기재한다.
- ②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③ 영문 및 국문 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의사록이 우선한다.
- ④ 의사록 사본은 이를 요청한 주주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 제 5 장 이사·이사회

# 제 36조 (이사의 수)

- ① 이 사회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선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37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8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보궐선거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9조 (이사의 보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41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1조의 2 (이사의 보고 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tele-conference)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4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영문 및 국문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영문 및 국문 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의사록이 우선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4조의 2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 아래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투명경영위원회
- 2. 내부통제위원회
- 3. 리스크관리위원회
- 4. 이해관계자거래위원회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5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6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 제 47조 (감사의 수와 선임)

- ①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47조의 2(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47조의 3(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7조의 4 (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 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7조 5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7조의 6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회 계

# 제 48조 (사업연도)

- ①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49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52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53조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특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 제 5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